



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취학통지 서비스 안내

예비 학부모님께

자녀의 한여울초등학교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은 원칙적으로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입니다. 취학통지서의 온라인 취학 통지 서비스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신청 시

- 1) 신청 사이트 : 정부24 (<https://www.gov.kr>)
- 2) 신청 기간 : 2022. 12. 2.(금)~2022.12.12.(월), 11일간
- 3) 신청내용: 취학통지서 열람 및 발급(출력 및 pdf 저장)

나. 온라인 발급 서비스 미신청 시

- 1) 방법 : 현행과 같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또는 우편 안내
- 2) 기간 : 2022. 12. 13.(화)~2022. 12. 20. (일)

다. 한여울초등학교 예비소집일

- 1) 1차:2022년 12월 28일(수) 14:00~16:00
- 2) 2차:2023년 1월 17일(화) 10:00~12:00

-1차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가정 및 전입한 가정

※ 한여울초등학교 예비소집일에 발급 받은 취학통지서를 꼭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1. 28.

한 여 울 초 등 학 교 장

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및 전학 금지 안내

◆ 위장전입이란?

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◆ 위장전입을 통한 입학 및 전학은 특정 학교의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를 유발하며,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저해시키고, 타인의 정상적인 입학 및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,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.

◆ 위장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·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.

◆ 위장전입을 통해 전학을 할 경우, 원적교로 돌아가야 하며,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.

◆ 원적교로 되돌아갈 경우,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,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

◆ 또한, 『주민등록법』제37조(벌칙)에 의거하여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**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.